

# 현행 석유산업 허용이익수준 적정한가

金 乾 治  
(本誌 편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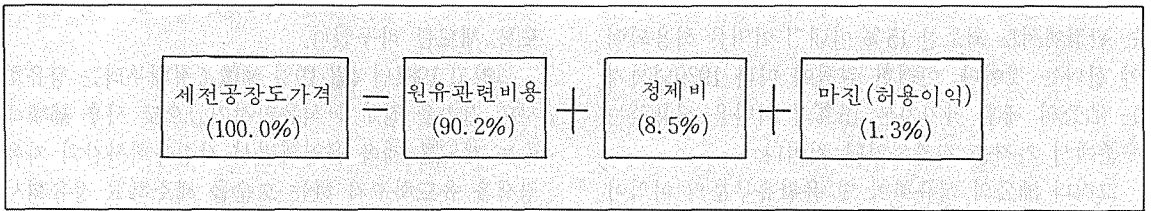
**석유** 산업은 「땅짚고 헤엄치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장사」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정유업계의 경영사정을 벗겨 보면 이러한 이미지는 한낱 虛構임을 알 수 있다.

1983~1988년 기간중 정유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7.3%로서 제조업 평균이익률(9.0%)에 미달될 뿐 아니라, 자동차(13.5%), 가전산업(13.0%)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매출액이익률은 더욱 낮아 이 기간중 정유산업은 0.8%를 기록하여 제조업평균(1.6%)의 절반 수준, 화학(2.8%) 및 자동차산업(2.9%)의 이익률에는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곧 정유산업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며, 엄청난 물량을 다루기 때문에 막대한 운전자금이 소요되는 반면, 薄利多賣가 강요되는 低收益性 산업이라는 점을 웅변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유산업의 이익이 저조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기인되고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결정, 고시할 뿐 아니라, 정유업계의 허용이익을 자기자본대비 세전 16.5%(세후 9.7%)로 제한, 정유사의 실현이익이 허용이익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전액 환수해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연말정산 때에는 실제로 발생한 정제비와 판매비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유업계는 항상 허용이익보다 낮은 경영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유산업의 성장이 정체되어 수요구조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시설고도화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油價관리는 가격수준과 석유제품간의 상대가격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격수준은 판매복합단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복합단가는 석유제품의 連産性으로 인한 총괄원가개념에 입각하여 정유5사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리하여 이 복합단가는 정유5사의 이윤을 포함하는 총제조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게 된다. 각 유통단계별 가격은 前단계 판매가격과 각단계별 유통수수료에 의해 결정되며, 이 수수료는 제품의 수송·저장·판매에 따른 제반비용을 감안하

국내 석유제품 원가구성내역



여 산정된다.

석유제품의 공장도가격은 원유관련비용과 정제비, 수송비,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유대관련비용은 원유비와 원유도입금융비로 구분된다. 원유비는 원유가격(FOB), 원유수송비, 국내도착 부대비(방위세, 무역특례자금, 1/2 개설비등), 관세 및 석유사업기금으로 구성되며 원유도입금융비는 원유도입유전스사용에 따른 단기 外貨차입금을 말한다.

정제비는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제품제조비용과 수송저유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조비용 및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주요비용은 노무비, 수도광열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보험료, 전력비, 공과금등이며, 수송저유비는 정유공장에서 저유소까지의 제품수송비와 저유비용을 포함한다. 현재 油價에 반영하는 정제비의 결정은 정유5사의 결산자료에 나타난 정제비를 가중평균하고, 여기에서 LPG 수입에 따른 국제가와 국내가의 차이로 인한 정유사의 이익분등을 차감하여 이루어진다.

석유제품 수송비의 경우는 정유공장에서 주요소비지역에 위치한 저유소나 대수요처까지의 석유제품수송을 정유회사가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송비를 정유회사 공장도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전국균일 수송비는 거리의 원근에 따른 가격차를 제거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석유제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따라서 원거리지방의 소비자들이 근거리 도시소비자들의 보조로 인하여 이들과 동일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油價결정시 정유사의 이윤은 세후기준으로 정유부문 자기자본의 9.7%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정유업계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같은 허용이익수준의 적정여부이다. 유가결정시 정유회사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정부와 업계간에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정유회사가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대로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유회사의 이익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에 있어서 석유의존도가 클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가격이 결정되면 그 가격수준이 높거나 낮거나에 크게 관계없이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油價결정시 정유회사의 손익 허용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 왔다.

정유산업 허용이익 변동추이

	1978	1981	1982	1987(현행)
세전	31.9%	24.0%	17.8%	16.5%
세후	15.0%	13.5%	10.0%	9.7%

(註) Box표시는 기준이익율

(자료) 대한석유협회

그러나 국내 여건상 정유회사에 과다이익을 허용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또 한편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유회사에 과다한 손실을 발생케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정유회사의 손익허용범위는 비교적 제한된 범위내에서 결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준이 되었던 것이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주는 독과점품목에 있어서의 허용이익수준인 「세후 자기자본의 15% 이익개념」이었다. 즉 정유회사도 민간기업일

뿐만 아니라, 1980년 이전에는 대부분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환경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최소한 15% 이내의 이익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1979년까지는 油公의 세후 자기자본 15%의 이익을 허용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油公의 석유화학 및 유통유부분의 이익이 커짐에 따라 세후 자기자본의 15% 이익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정유부문에서 결손을 나타내게 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도입된 개념이 다른 부문의 손익에 관계없이 별도로 정유부문의 손익수준이 "0"이 되도록 하는 개념이었다. 즉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 정유회사가 결손을 내게 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익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79년 제2차 석유위기의 결과 국제원유가격이 다원화되면서 국내 유가를 결정하는 원가요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대에서 격차가 발생하자 정부는 종전 방식에 의한 油價조정방식으로는 더 이상 각정유사간의 손익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국내 석유수요증가에 대응한 각정유회사의 시설확충으로 유종별 판매구조가 변화됨으로써 종전까지의 社別 손익구조가 달라지게 된 것도 종전 방식을 따르기 어려운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원유가에서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원유가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석유안정기금에 의한 정유회사의 손익통제를 시작했던 것이다. 더구나 1980년 2월 27일부터 도입된 변동환율제에 따라 유가에 환율변동을 사전에 예측하여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정유회사 손익의 사후통제를 불가피하게 만든 커다란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종전과 같이 油公의 손익을 기준으로 한 油價조정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었으므로 정부는 1980년 11월 19일 油價조정때부터 종전까지의 油公기준에서 정유5사의 손익을 기준으로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1981년 4월 19일 油價조정때부터는 정유회사의 결손을 정부가 석유안정기금으로 사후 補塲해주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면서 각정유회사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정유회사의 책임경영과 최소한의 이익동기 부여라는 측면에서 석유안정기금에 의한 정유사 결손補塲제도를 폐지하고, 油價산정때 세후 정유부문 자기자본의 13.5%이익을 허용하도록 결정했다. 이 허용이익수준은 그후 1983년 4월 19일 油價조정때 10%로 인하되고, 1987년에 다시 9.7%로 인하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이익수준은 油價산정때 적용되는 사전적 이윤개념으로서 사후적으로 세후 9.7%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정유회사의 실제 발생비용중 상당액이 정부에 의해 연말정산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그 실현이익은 항상 정부의 허용이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유산업 허용이익의 低수준은 주주에 대한 배당 및 상법상의 법정적립금 적립을 위한 수준에도 미달할 뿐 아니라, 재투자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함으로써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장과

정제시설 증설 허가규모

(단위: 천B/D)

	油公	湖油	京仁	雙龍	極東	計
1989말 현재	280	380	60	60	60	840
1992년말	375	380	160	160	160	1,235
투자소요(억원)	1,532	-	1,020	475	811	3,838

(자료) 대한석유협회

석유제품 소비(내수)증가 추세

	1986	1987	1988	1989	1990	1992	'86~'92증가율(%)
수요(천B/D)	550	577	685	778	917	1,153	13.13
정제능력(천B/D)	790	790	790	840	840	1,235	7.7

(자료) 대한석유협회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 건설계획

(단위 : 천B / D)

	油 公	湖 油	京 仁	雙 龍	極 東	計
분 해	30	30	30	30	34	154
탈 황	30	30	30	30	-	120
가 동 에 정	1991末	1992末	1993末	1992末		-
투자(억원)	4,000	2,678	2,950	2,345	4,697	16,670

〈자료〉 대한석유협회

수요구조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중질유분해시설 및 탈황시설등 정제시설고도화 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석유수요는 고도경제성장과 유가 하락에 힘입어 두자리 숫자로 증가하였다. 1989년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는 2억8천7백만배럴로 '88년 대비 14.6%나 늘어나고, 1990년에도 16.4% 증가한 3억3천4백만배럴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석유의존도는 1990년에 53.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석유수요구조는 점차 경질화·저유황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 국내 수요증가에 발맞춰 공급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유업계는 총3천8백여억원을 투입, 1992년까

지 정제능력을 현재의 84만B / D에서 1백23만5천 B / D 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와 아울러 석유수요구조의 경질화·저유황화추세에 대응하여 중질유분해시설 및 탈황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1조6천여억원이 소요된다. 이밖에도 장거리송유관 건설에 약4천3백억원이 소요된다. 결국 정제시설 확충과 시설고도화, 그리고 장거리송유관 건설의 소요재원은 총2조4천8백억원에 이르고있다. 따라서 정유업계의 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정유산업에 대한 허용이익률의 상향조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제 석유산업은 「황금의 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오히려 「속빈 강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다.♣

**무재해기 계양 지상 캠페인①**

(한국산업안전공단 제공)

무재해운동의 기본정신은

인간존중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그 심볼로

무재해 기를 계양합시다.

경영자·근로자는

필력이는 무재해 기를 보며

안전생활을 다짐합시다.

